



전 주 지 방 법 원

결 정

사 건 2022호기 가족관계등록창설

신청인겸사건본인 김 ()

주 소 전주시

송달장소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, H타워 301호 법무사
전종필 사무소(만성동 1366-9) (송달영수인:전종필)

주 문

등록기준지를 전라북도 전주시 정하고 사건본인에 대하여
별지 신분표 기재와 같이 가족관계등록창설하는 것을 허가한다.

신 청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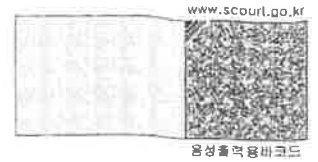
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,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22. 5. .

판사



※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(번호)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,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
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

사 건 2017드단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 원 고 김
 주소 서울
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
 소송대리인 변호사
 피 고 김 ()
 주소 전주시
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
 변 론 종 결 2017.
 판 결 선 고 2018.

주 문

1.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.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